

수탁과제 최종보고서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6. 7

공공기관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 출 문

국무조정실 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목 차

I. 정부업무평가 현황	1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2. 정부업무평가 이슈	8
3.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과정	9
4. 평가유형별 중점 추진내용	12
5. 정부업무평가 인프라 강화	14
6. 분야별 평가방법	17
II. 통계학의 결측치 처리방안	2
1. 발생 매커니즘에 따른 결측치 분류	25
2. 결측치 처리법	27
III. 정부평가 사례	3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32
2. 통합재정사업평가	37
3. 기금운용평가	41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44
5.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46
6. 종합 및 소결	50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참고문헌	5

<표 차례>

<표 I-1> 정부업무평가 목표체계	3
<표 I-2>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5
<표 I-3> 정부업무 평가 평가분야와 배점 (2015년 기준)	6
<표 I-4> 2015년 대비 2016년 주요 변경사항	7
<표 I-5> 평가 부문별 주관	7
<표 I-6>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과정	9
<표 I-7>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유형	12
<표 I-8> 국정과제 평가항목	17
<표 I-9> 규제개혁 부문 평가대상	19
<표 I-10> 규제개혁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19
<표 I-11> 정책홍보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20
<표 I-12> 정상화과제 부문 평가항목	21
<표 I-13> 정부3.0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22
<표 I-14> 성과관리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23
<표 I-15> 특정시책 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24
<표 II-1> 전통적 결측치 보정방법과 장단점	31
<표 III-1>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32
<표 III-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	34
<표 III-3> 통합재정사업평가 개요	37
<표 III-4> 통합재정사업평가 : 부처 자체평가 지표	38
<표 III-5> 통합재정사업평가 : 메타(상위)평가 지표	39
<표 III-6> 기금운용평가 개요	41
<표 III-7> 기금운용평가 지표	42
<표 III-8>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개요	44

<표 III-9>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	45
<표 III-10>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개요	46
<표 III-11>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평가지표	47
<표 III-12> 정부평가 사례의 결측치와 환산방법 종합	50

<그림 차례>

[그림 II-1] 결측발생의 메커니즘	26
----------------------------	----

I. 정부업무평가 현황

1. 정부업무평가 개요

가. 근거법과 기본계획

-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61.9~'81.10)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90.4~'94.1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94.12~'98.2),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 ('98.3~'06.3)를 거쳐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 통합평가 ('06.4~현재)의 형태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는 최초입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1월에 제정 및 공포 되었으며 동년 5월부터 시행됨. 2006년 5월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전면개정을 거쳐 지금의 구조를 갖추게 됨
 - 기존에는 중앙부처만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중앙부처 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하도록 제도화
 -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주도하도록 함
 - 중앙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그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자체 평가 실시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중기목표와 기본정책방향을 밝히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
 - 최소 3년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수정·보완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13~'15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기초로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16~'18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마련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평가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매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나. 정부업무평가의 목표체계 및 기본방향

1) 목표체계

<표 1-1> 정부업무평가 목표체계



2)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개혁과제, 규제개혁 등 국정운영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평가로 정부의 성과창출을 지원
 - 현장·협업·홍보평가를 강화하여 체감성과를 높이고 정책수혜 확대
 - 기관별 성과목표와 추진전략이 국정과제, 핵심개혁과제와 연계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

- 일선현장에서의 국정시책 이행력 강화
 - 지자체 평가는 집중적인 이행관리가 필요한 국정과제·현안 중심으로 실시
 - 재정개혁을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개별평가 정비로 지자체 평가부담을 최소화

- 공공기관개혁의 완수 지원
 -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성과를 엄정히 평가
 - 출연(연) 연구혁신성이 향상되도록 평가지표 등 개선

- 정부업무평가 인프라 강화
 - 정부업무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통계기법 등 지속 보완 개발
 - 평가제도·법령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평가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다.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1) 평가 추진방향

- 국정과제, 핵심개혁과제 등 평가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 협업·소통 강화 등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실시

2) 평가 추진체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 역량 등을 평가
-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표 1-2>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라. 평가대상 및 부문

1) 평가대상

- 정부업무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매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2) 평가부문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 공통사항의 5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① (국정과제) 국정과제 및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② (규제개혁)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③ (정책홍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와 체감도 제고
 - ④ (정상화과제) 정상화과제에 대한 추진성과 및 노력을 평가하여 기본이 바로선 국가 확립 뒷받침
 - ⑤ (기관공통사항) 정부3.0, 부처간 협업, 특정시책 이행노력과 성과 평가
- 각 분야별 배점은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 과제 10점, 기관공통사항 ±10으로 되어 있으며 국정과제의 핵심개혁과제의 경우 과제당 최대 ±1점을 부여함

<표 1-3> 정부업무 평가 평가분야와 배점 (2015년 기준)

평가분야	배점
▪ 국정과제	50
	+ 핵심개혁과제(과제당 최대 ±1)
▪ 규제개혁	20
▪ 정책홍보	20
▪ 정상화과제	10
▪ 기관공통사항	±10
	* 정부3.0(±5), 협업(±3), 특정시책(±2)

<표 1-4> 2015년 대비 2016년 주요 변경사항

2015년 평가	2016년 평가
① 국정과제 50 핵심개혁과제(과제별 최대 ±1) ② 규제개혁 20 ③ 정책홍보 20 ④ 정상화과제 10 <hr/> ⑤ 기관공통사항 ±10 (정부3.0 ±5, 협업 ±3, 특정시책 ±2)	① 국정과제 50 핵심개혁과제(과제별 최대 ±2) 협업(기관별 최대 ±1) ② 규제개혁 20 ③ 정책홍보 20 ④ 정상화과제 10 <hr/> ⑤ 기관공통사항 ±10 (정부3.0 ±5, 성과관리 ±3, 특정시책 ±2)

3) 평가방법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국조실 등)이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평가 병행

*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참여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성취도를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표 1-5> 평가 부문별 주관

평가 부문	주관	평가지원단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포함)	국무조정실	국정과제평가지원단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평가지원단
정책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평가지원단
정상화과제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평가지원단
기관 공통	정부 3.0	행정자치부
	성과관리	국무조정실
	특정시책	고용부·복지부·중기청 등

4)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각 기관이 성과급 등에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

2. 정부업무평가 이슈

가. 규제개혁지표 결측

-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은 42개 대상기관 중 27개 기관에서 측정
 - 42개 기관중에서 15개 기관(36%)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장관급 4개 기관(18%), 차관급 11개 기관(55%)이 해당
 - 규제개혁 부문의 적용이 되지 않는 기관은 규제개혁 지표의 측정값이 없음
- 규제개혁지표의 이슈는 평가분야항목의 결측이 아니라 규제개혁 지표에 대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기관에 대한 대응의 문제임
 - 규제개혁 지표의 결측은 임의로 (missing at random)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성에 따라 규제개혁 지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systematic missing에 해당함
-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지표의 결측이 나타나는 양상은 통계학의 결측치 발생 분류에서 비임의결측(MNAR, **Missing not at Random**)에 해당
 - 자료가 완전임의결측(MCAR) 또는 임의결측(MAR)이면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이 필요치 않지만, 결측치를 무시할 수 없는 비임의결측(MNAR)에서는 편이(bias) 없이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움

- 통계학에서 다양한 결측치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결측치 처리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움
 - 결측치를 처리하는데 통계적 개념과 처리법을 많이 가미할수록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기존 통계학, 행정학의 결측치 연구는 대규모 설문조사의 일부항목에 대한 결측치 처리방안을 다루고 있음
 - 다른 정부 주관 평가에서 이러한 결측기관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결측기관 발생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과정

-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61.9~'81.10)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90.4~'94.1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94.12~'98.2),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 ('98.3~'06.3)를 거쳐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 통합평가 ('06.4~현재)의 형태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음

<표 1-6>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과정

단계 내용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	통합
담당 기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시기	'61.9~'81.10	'81.11~'94.12	'90.4~'94.12	'94.12~'98.2	'98.3~'06.3	'06.4~
내용	심사분석제도 도입	심사분석업무 경제기획원 이관	정책평가 기능 신설	심사분석과 정책평가 통합	기관평가제도 도입	통합적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도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정부 주요정책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총리령)	정부업무의 심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61.9~'81.10)

-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교수단¹⁾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81.11~'90.34)

- 정부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예산사업 위주 평가 등 이전 제도의 틀은 유지)
- 심사분석 결과 예산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편성 및 배정에 반영하고, 비 예산사항은 국무총리가 시정 요구

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90.4~'94.12)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 흐름을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제시로 등장
- 부처별 1~2개 특정정책을 대상으로 점검리스트를 통해 평가

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94.12~'98.2)

-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를 일원화
- 정기 심사평가와 수시 심사평가업무로 구분
 - 정기 심사평가 :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반기별 국무회의 보고
 - 수시 심사평가 :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

1) 1965년에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구성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중간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를 실시(90명의 평가교수가 전공분야별로 정부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평가)

마.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기관평가 ('98.3~'06.3)

- 각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외에 기관의 정책추진 역량과 국민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단순한 과제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간 경쟁요인을 도입
- 최초입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행('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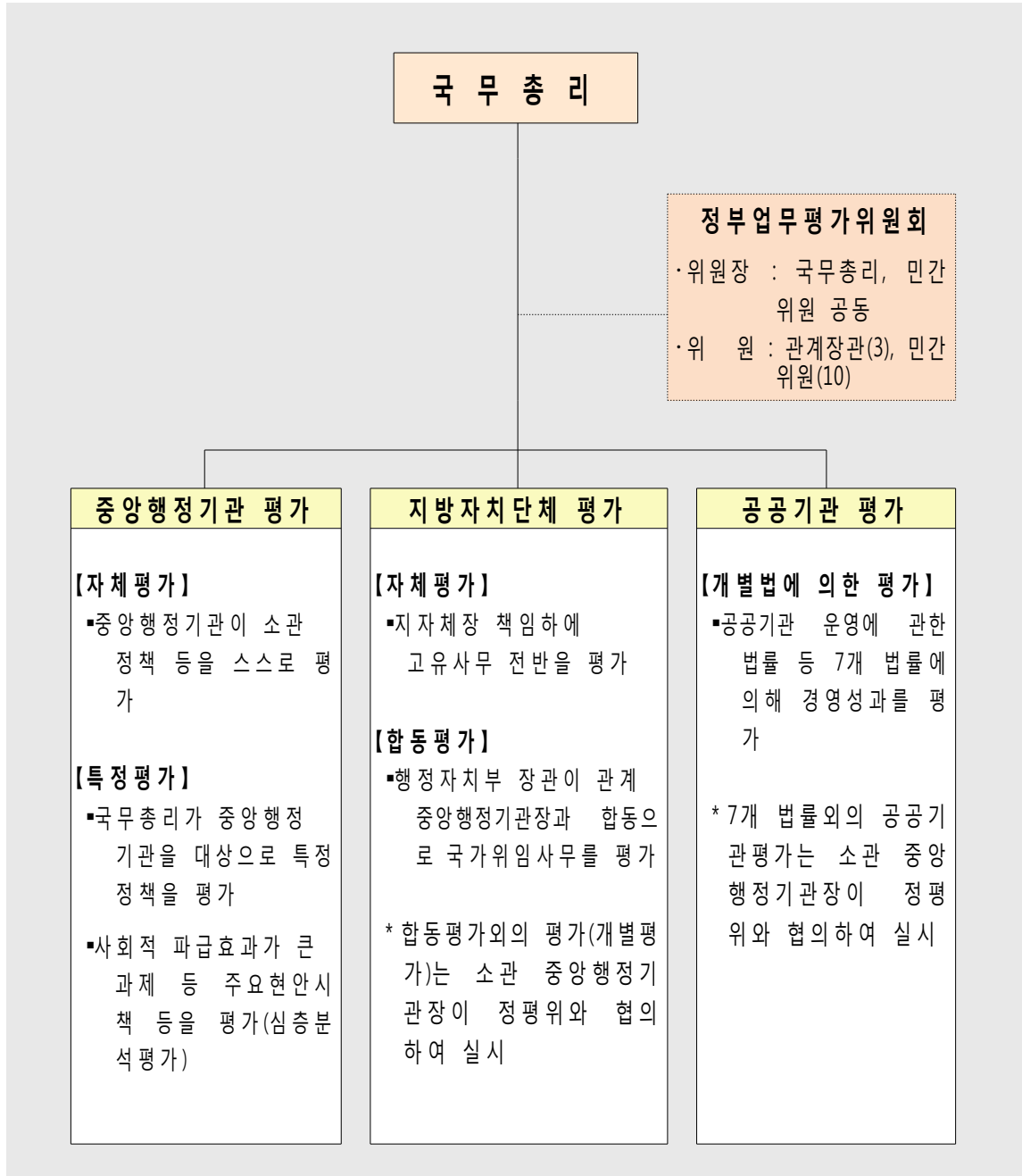
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 통합평가 ('06.4~현재)

-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통합 실시하고, 성과관리 제도 도입으로 개량적 성과지표 개발·적용
- 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평가결과의 개인 성과 반영 강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전면개정·시행('06.5)

4. 평가유형별 중점 추진내용

가.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유형

<표 1-7>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유형



나.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 ◆ 국정운영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평가
- ◆ 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관리 연계 강화
- ◆ 심층분석평가 강화
-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정합성 제고

1) 국정운영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평가로 성과창출 견인

- 국정과제 중심의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핵심개혁과제, 규제개혁 등 가시적 성과창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여, 현장의 국민체감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특히, 정책집행현장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행결과를 집중 점검·평가
- 국민의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소통의 노력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

2) 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관리 연계 강화로 평가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후속조치 등을 보완
 - 평가결과가 정책개선 컨설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흡·개선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
 - 지적사항의 개선·보완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 평가결과와 평가대상기관 인사·보수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성과관리·특정평가 체계 보완

3) 심층분석평가 강화로 평가의 시의성·전문성 강화

- 국민생활·안전 등과 밀접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평가 실시
- 현장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과 협업하여 실현가능한 개선방안 도출
- 심층분석평가 결과는 국정회의체에 상정하여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행결과를 특정평가에 반영

4) 자체평가가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특정평가와의 정합성 제고

- 기관별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이 국정과제·핵심개혁과제 등의 성과와 연계되도록 실태점검 및 보완
-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관리 역량 제고

5. 정부업무평가 인프라 강화

주요 내용

- ◆ 과학적·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 ◆ 정부업무평가 제도개선
-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 ◆ 평가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가. 정부업무평가에 적합한 과학적·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 기관별 핵심 과업·과제를 포괄하는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지속 발굴 및 체감중심의 산출·결과지표 확대
- 기관별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요소²⁾ 개발, 정부업무평가에 적합한 통계기법³⁾ 개발 등 평가체계의 과학성 제고

나. 정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 검토·추진

- 개별평가 운영실태 종합점검 및 정비방안 마련, 개별평가 남설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등을 통해 실질적 통합평가제도 실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06년) 이후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 평가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검토·추진(평가체계·유형·방식, 환류 등)

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 DB 구축

- 전자통합평가시스템⁴⁾을 정보통신 발전, 사용자 편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 평가 전과정에 대한 통합지원으로 평가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절감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평가 관련 각종 자료 DB 기능⁵⁾을 구현, 정보축적 및 활용도 제고

라. 평가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 각종 평가위원 위촉시 전문성·객관성 있는 인사의 참여기회가 확보되도록 사전

2) 외교·안보·사회 등 분야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 보완
3) 결측기관의 점수처리방법, 복합적 성과지표, 편차보정기법 등
4) e-IPSES ; electr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5) 평가자료 전반을 DB화, 평가전문가 인력DB 구축, 통계·검색 기능 강화 등

검증 강화

- 각 기관 자체평가위원회, 부문별 평가지원단 등에 '표준윤리강령'⁶⁾ 적용을 확대하여 독립성·공정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평가지원단 등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경험이 평가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점검·평가방식 보완
 - 위촉시기·연임방식 등도 합리화

마. 정부업무평가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평가전문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및 학계 등과의 협력·공동연구⁷⁾를 활성화하여 평가 전문성 제고
- 국제사회와의 평가경험 공유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
 - 주요국과 평가포럼 개최·참여, 개도국에 평가노하우 전수 등

바. 향후 계획

-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기초로 「'16년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
 - 「'16년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16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추진

6) 알선·청탁 등 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을 규정

7) 주요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성과지표 개선 및 DB구축, 평가제도 개선 등

6. 분야별 평가방법

가. 국정과제 평가

1) 평가방향

-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40개 국정과제 전반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
- 핵심개혁과제, 협업 등의 평가 반영비중을 확대, 기관 역량 집중을 통한 연내 성과창출 유도

2)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과제(주관 국정과제 1개 이하 기관), 핵심개혁과제 및 협업

3) 평가항목

<표 1-8> 국정과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 용	비고	배점
집행이행도	•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	정성/ 정량	2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 정량	4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종합 평가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개선정도 포함)	정성/ 정량	40

4)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

- 과제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후, 기관별 주관과제 평정 점수 합산·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

나) 평가항목별 평정 방법

- (집행이행도) 전체 단위과제수 대비 단위과제별 완수 여부에 따른 점수 합계 비율
 - '15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이행 및 상황대응 미흡시 감점
- (성과지표달성도) 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여부에 따라 평정,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⁸⁾에 따라 합산
- (정책효과)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효과⁹⁾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및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국민체감도 반영 및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원단(민간전문가 등) 구성, 평가 실시

◇ 가감점 평가

- 핵심개혁과제 : 과제별 ±2점 이내 점수 부여 및 국정과제 기관별 점수에 합산
- 협 업 : 기관별 ±1점 이내 점수 부여 및 국정과제 기관별 점수에 합산

나. 규제개혁 평가

1) 평가방향

-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정 보다는 규제개혁 성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

8) 지표별 가중치는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

9) △성과지표 외 정책성과 △향후 효과발생 기대정도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정도 등

2) 평가대상

- 전체 42개 중 2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함. 등록규제 수(30개 미만) 및 부처 특성을 고려 15개 기관 제외

<표 1-9> 규제개혁 부문 평가대상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18개)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안전처
차관급(9개)	인사처, 보훈처,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3) 평가항목 및 지표

<표 1-10> 규제개혁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규제, 네거티브 설정 등 관련지표 달성도 등 과제 현장점검 등 이행 성과 	정성/ 정량	50
규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규개위 운영 성과 등 	정성/ 정량	15
규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신문고 성과 등 	정성/ 정량	20
규제개혁 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홍보노력 및 규제개혁 만족도 등 	정성/ 정량	15

4) 평가방법

- 기관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관을 범주화하여 평가
-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국장급 공무원 등

다. 정책홍보 평가

1) 평가방향

-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체감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의 홍보노력 및 성과 중심 평가

2)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3) 평가항목 및 지표

<표 1-11> 정책홍보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국정과제 홍보활동	•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	7점
	• 기관간 홍보협업 실적	15점
	• 언론 대응 실적	8점
국정과제 홍보성과	• 방송·신문 보도성과 * 외신 대응 실적	16점 (±2점)
	• 기관장 홍보활동 성과	14점
	• 온라인 홍보활동 성과	30점
	• 국정홍보과제 홍보결과	10점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		±2점

4) 평가방법

- 각 기관의 정책 홍보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라. 정상화과제 평가

1) 평가방향

- 체감도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과제선정 및 계획충실도' 비중을 확대하고, 정상화 효과, 정상화 홍보·확산 등을 종합평가

2) 평가대상

- 39개 중앙행정기관의 100개 정부핵심과제 중심으로 평가
 - 정부핵심과제가 없는 3개 기관은(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중점관리과제 선정(가감점 부여 검토)

3) 평가항목

<표 1-12> 정상화과제 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방법	배점
과제선정 및 계획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발굴·선정의 적극성 및 이행 계획의 완성도 	정성	20
과제 이행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세부과제 이행계획의 완수 여부 	정량	20
정상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화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평가 	정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정량	
정상화 홍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홈페이지 등 홍보 및 타 기관·민간 등으로 확산 실적 평가 	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으로 이관된 자체관리과제 추진실적 평가 		

3) 평가방법

- 기관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민간 전문가 등으로 「정상화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평가

< '15년 평가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 '과제선정 및 계획충실도' 항목 비중 확대(10% → 20%)
- ▶ '정상화 홍보·확산' 항목 비중 축소(30% → 20%)

마. 기관공통사항 평가

1) 정부 3.0

가) 평가방향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관의 중점 성과를 평가

나)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다) 평가항목 및 지표

<표 1-13> 정부3.0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추진역량	• 정부3.0 변화관리 및 확산노력 실적	24
중점과제 성과	• 국민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개선 실적	36
	•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15
	•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 공개·활용 실적	25

* 100점 만점 평가 후 평균점을 기준으로 ±5점으로 전환

라) 평가방법

- 각 기관 중점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 행자부 주관, 「정부3.0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2) 성과관리

가) 평가방향

- 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심층분석, 개별 평가 등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지원

나)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다) 평가항목 및 지표

<표 1-14> 성과관리 부문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관리·자체평가	•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	±2
심층분석 등	• 현안 심층분석 결과 이행실적, 민원만족도 등	±1
개별 평가	• 개별평가(중앙행정기관·지자체) 사전협의 이행실태	0.5점 이내 감점

라) 평가방법

- (성과관리, 심층분석) 국조실 주관 점검결과 점수(100점 만점)의 기준점(예: 70점) 이상 달성 여부에 따라 가감점 부여
- (개별 평가) 개별평가(중앙행정기관·지자체) 사전협의 미이행 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3) 특정시책

가) 평가방향

- 장애인 고용 등 주요 시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법정기준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

나)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다) 평가항목 및 배점

<표 1-15> 특정시책 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장애인 고용	• 법정 의무고용률(3%) 중심 가감점	±0.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1%) 중심 가감점	±0.6
중소기업 제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중심 가감점	±0.6
기술개발 제품 구매	• 기술개발제품 법정 권장 구매비율(10%) 중심 가감점	±0.2

라) 평가방법

- 법정기준 등 달성여부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 각 평가항목별 시책 소관 기관*에서 추진실적 확인·검증

* 고용부(장애인 고용), 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 중기청(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 제품)

II. 통계학의 결측치 처리방안¹⁰⁾

1. 발생 매커니즘에 따른 결측치 분류

□ 본 장에서는 규제개혁 부문의 결측치 대체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업무평가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통계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살펴봄

□ 통계학적으로 결측치가 발생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해당 샘플을 제거하거나, 결측치를 다른 값을 이용하여 대체하는 것임

○ 결측치가 발생한 샘플의 제거, 단일대체, 다중대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가. 완전임의결측 (MCAR,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 자료 집합을 거대한 직사각형 행렬로 보았을 때 전체 행렬에 걸쳐 결측치가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

□ 자료 수집 단계에서 결측치를 고려하지 않는 한 드물게 발생(Rubin, 1976)

□ 자료 집합에서 결측치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특정한 패턴이 없으며, 자신이나 다른 변수와 연관성도 없음 (Acock, 2005; Bennett, 2001)

나. 임의결측 (MAR, Missing at Random)

□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측치가 자신에 의존하지 않고 분석 모델의 다른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에 따라 결측치는 임의로 발생한다고 봄(Schafer,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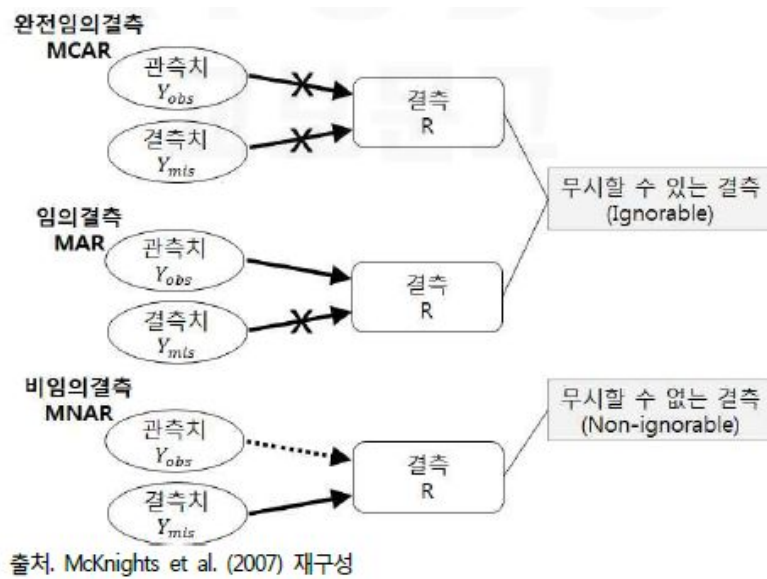
□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측치의 구조를 설명

10) 권순창(2012), p57~61

다. 비임의결측 (MNAR, Missing not at Random)

- 결측치가 발생한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가장 난해한 상태
- 자료가 완전임의결측(MCAR) 또는 임의결측(MAR) 이면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이 필요치 않지만, 결측치를 무시할 수 없는 비임의결측(MNAR)에서는 편이 없이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을 필요

[그림 II-1] 결측발생의 메커니즘



자료: 고길곤 외(2014), p

- 결측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결측치를 “무시할 수 없는(NI, Non-ignorable)” 결측치라고 정의
 - 보통 결측치의 발생원인이 결측된 변수의 값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의 결측치 발생기제가 무시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간주됨
 - 예를 들자면, 교육수준이 낮은 저학력 계층에서 학력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주어진 관측치들을 가지고는 과연 어떤 조사대상자가 저학력 계층인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

2. 결측치 처리법

가. 제거(Deletion Methods)

- 결측치 처리의 기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결측치가 발생한 표본을 제거하거나 한가지 값으로 대체하여 넣는 방법 (Single Imputation)이라 할 수 있음
 - 제거는 결측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결측이 발생한 샘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권장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

1) 완전제거법 (Listwise Deletion) = 완전사례분석방법 (Complete case analysis)

- 결측치가 제외됨에 따라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 집합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완전임의결측(MCAR)을 가정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 분석에는 적합치 않음
- 또 다른 문제점은 전체 샘플 수를 감소시켜 결측치 비율에 따라 중요할 수 있는 다른 변수 자료까지 제외됨에 따라 검사의 유의도와 power에 영향을 줌
 - 완전임의결측(MCAR)의 경우 관찰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데이터의 임의의 부분 집합으로 listwise 방식으로 삭제해도 문제가 없지만, 임의결측(MAR)과 비임의결측(MNAR)의 경우 샘플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표준오차를 팽창시켜 유의수준이 축소되며 Type II error가 증가
 - 예컨대, 다변량 분석에서 한 요인의 효과는 확대되고, 다른 요인의 효과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편이 방향이 반대로 될 수 있어 결과에 큰 영향을 초래(Acock, 1989)

2) 대응제거법 (Pairwise Deletion) = 가용사례분석방법 (Available case analysis)

- 특정 변수가 사용되는 분석에서만 결측치를 제외시킴에 따라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
 - 그러나 서로 다른 샘플이 사용됨에 따라 특정한 단일 샘플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산출할 수 없어 회귀방정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과 같은 다변량 분석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이 방법 역시 listwise 제거와 마찬가지로 샘플 수는 증가시키지만 자료구조가 완전임의결측(MCAR)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자료가 완전임의결측(MCAR)을 충족하지 못하면 편이가 발생

나. 단일대체방법 (SI, Single Imputation)

- 단일대체방법(SI)은 연구자가 결측치를 가장 그럴듯한 단일 값으로 대체하는 기존의 대체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평균, 회귀대체법 등이 있음
- 완전한 자료집합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오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평균과 마찬가지로 회귀 대체도 가상의 자료 값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모수 추정에 편이가 발생

1) 평균대체(Mean substitution)

- 해당 변수에 대한 무결측치에 근거한 해당 변수의 평균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이 방법은 데이터가 완전임의결측(MCAR)이면 성립하나 다른 경우에는 편이가 있는 결과를 초래함
- 임의결측(MAR)과 비임의결측(MNAR)의 경우에 분산과 공분산이 저 평가되고, 평균에 편이가 발생함에 따라 권장되는 방법은 아님

2) 회귀대체(Regression substitution)

- 결측치가 종속 변수인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회귀 방정식을 산출해서 결측치를 대체
- 이 방법은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최적의 추측으로 완전임의결측(MCAR)과 임의결측(MAR)에 대해 편이가 없는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역시 분산과 공분산값에 있어 편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다. 다중대체방법 (MI, Multiple Imputation)

-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된 결측치 대체 기법 중에서 다중대체방법(MI)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법으로 좀 더 정확한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체 과정에 다른 변수로부터의 정보를 포함시킴(Finch, 2010).
- 다중대체방법(MI)는 Rubin (1987)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단일대체방법(Single Imputation)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 SI와 달리 MI에서는 대체된 자료 집합이 랜덤하게 생성되면서 샘플링으로부터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함
 - 대체된 자료 집합은 회귀분석, 분산분석, 요인분석 등의 일반적인 통계분석을 수행가능
 - MI는 여러 문헌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MCAR와 MAR 자료에 모든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편의가 없는 추정치를 제공
 - 그러나 자료가 MNAR 구조이면 비록 기존의 방법보다 편이의 왜곡율은 낮지만 모수 추정에서 편이가 발생하기 쉬움

1) MI 분석법

- 다중대체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대체값을 만들어냄
 - 대체된 값에 임의의 오차를 포함시켜 불확실성을 고려
 - 베이지안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MCMC나 결합분포를 알지 못하는 경우 FCS에 의한 다중대체방식 사용
 - 다중대체방법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값을 만들어냄
 - 각각의 결측치를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 대체값으로 대체한 m개의 데이터셋을 생성
 - m개의 완전한 데이터셋을 각각 분석하고 각 데이터셋의 분석결과에서 모수의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계산
 - 각 데이터셋 결과를 Rubin's rule에 따라 결합
- 다중대체는 m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pooling해서 개선된 모수 추정치를 제공

- m 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pooling해서 m 개의 결과가 유사하다면 이는 대체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결과가 상이하다면 표준 오차를 종합해서 불확실성을 처리할 수 있어 결측치의 불확실성을 표준 오차로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어 주로 사용되고 있음

라. Hot Deck과 k-NN

1) Hot deck

- 결측치가 없는 응답자의 패턴을 결측치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설문 조사 자료에서 사용되어 옴
- Bennett (2001)은 listwise 제거 또는 평균 대체보다 적은 편이를 갖는 것을 관찰했으나, 위에서 설명한 다른 대체 방법처럼 단일 값으로 대체시 자료의 분산이 감소

2) k-NN(k-nearest neighbors algorithm)

- k-NN은 가장 간단한 기계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자료 특성을 기준으로 훈련 샘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료를 분류(박혜영, 2011)
- k-NN은 주어진 자료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k 개의 자료를 찾은 후, 그 중 가장 많은 수의 자료가 포함된 그룹에 할당하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자료의 분포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선형적 구분이 가능한 장점

<표 II-1> 전통적 결측치 보정방법과 장단점

	보정방법 상세	장단점 비교
완전 제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변수라도 결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관측치 자체를 분석에서 제외시킴 ▪ 통계 프로그램에서 디폴트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임의결측(MCAR)이 아닌 경우 분석결과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손실과 검정력 약화의 문제 발생
가중값 보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특정변수(예, 성별,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의 조사 설계 시 예상 관측치 수에 대비한 실제 응답한 관측치의 수의 비율을 응답확률로 정의함 ▪ 응답확률의 역수를 가중값으로 관측된 값에 곱하여, 분석결과를 보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값을 변수의 관측된 값에 곱하면 해당 변수의 분산이 증가하게 됨 ▪ 무응답과 관련 있는 변수는 편이가 줄어드는 대신 분산이 늘어나는 상충 관계지만, 무응답과 관련 없는 변수는 분산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음
평균 대체법	<p>결측이 발생한 변수의 관측된 값의 평균으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p>	<p>평균대체 시 해당변수의 추정값에 편이가 발생하며, 표본분산이 과소추정됨</p>
회귀 대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측치를 포함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서 하는 회귀식을 구성하고, 이렇게 추정된 회귀식의 예측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 ▪ 변수의 특성에 따라(예. 연속형 변수, 범주형 변수와 교호작용항 및 이차항 등) 회귀식을 구성하여 예측력을 향상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식을 이용한 단일대체의 경우 결측된 값을 마치 실제로 관찰된 참값으로 가정하고 분석하므로 대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음 ▪ 표준오차가 과소추정 되어 p-value가 실제보다 작아지며, 신뢰구간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핫덱 대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대체방법 ▪ 결측치를 자료에서 '비슷한' 성향(예. 나이, 소득, 성별 등)을 가진 응답자들(대체군)의 값을 임의로 추출하여 결측치를 대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대체군을 형성하는지와 어떤 순서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대체값이 달라짐 ▪ 대체에 대한 명확한 분포가정이나 모형을 정의하지 않아 수리적으로 편의를 계산할 수 없어 대체의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자료 : 고길근외(2014), p57

Ⅲ. 정부평가 사례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가. 개요

- 본 장에서는 정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 평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평가에서 특정 지표에 적용가능하지 않은 대상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함

<표 III-1>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평가명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근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시작	공기업·준정부기관 : 2007년 (정부투자기관 : 1984년, 정부산하기관 : 2005년)
빈도	1년
시행시기	3~6월
결과발표시기	6월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평가주체	경영평가단(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평가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I/II),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강소형기관
평가기준	경영관리(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주요사업
목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함
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 제출 : '17년3월20일 평가단 평가 완료 후 공운위 심의 및 의결, 기재부 결과 확정 : '17년6월20일
최종결과 발표양식 (등급 또는 점수)	등급(S,A,B,C,D,E)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대상) 1984년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05년 정부산하기관이 추가되었고, 2007년도부터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함
 - (목적) 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기준) 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함

나. 평가지표

<표 III-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

범주	평가지표명		계량/ 비계량	가중치							
				공기업		준정부(위탁)		준정부(기금)		강소형	
				중장기 제출	중장기 비제출	중장기 제출	중장기 비제출	중장기 제출	중장기 비제출	중장기 제출	중장기 비제출
경영관리	1.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공)전략기획및사회적책임 (준)전략기획및기관혁신	비계량	2	2	2	3	2	3		
		기관의 경영혁신	비계량	3	3	3	3	3	3		
		국민평가	계량	2	2	2	2	2	2	2	2
		정부 3.0	계량	1	1.5	1.5	1.5	1.5	1.5	1.5	1.5
		경영정보공시 점검	계량	1	1.5	1.5	1.5	1.5	1.5	1.5	1.5
		정부권장정책	계량	5	5	5	5	5	5	5	5
		2.업무효율	계량	8	8	6	6	4	5	5	5
		3.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비계량	2	3	2	3	2	3		
	4.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공)(준-위탁)(강)재무예산관리 (준-기금)예산관리	비계량	2	3	2	2	2	2	2	
		자구노력 이행성과	비계량	4		4		4		3	
		재무예산 성과 (부채감축달성도)	계량	6	6	6	4			32)	1(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계량	2		2		1		4	6(5)3)
		(준-기금)(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계량 관리 업무비	계량	2	3	3	6	4	6		
	5.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비계량	6	6	6	6	6	6	3	3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비계량	2	2	2	2	2	2	1.5	1.5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	3	3	3	4	3	3	3	3
		노사관리	비계량	3	3	3	3	3	3	2	2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비계량/계량	18/32	20/30	18/32	20/30	18/32	20/30	10//20	10//20

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경영평가편람, 2016

다. 결측치 처리

- 기관 유형(공기업(I/II),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별, 중장기 제출 여부별, 기타 조건별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함
 - 특히, 강소형 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관 특성별로 예외규정 존재함
 - 1) 강소형 기관유형에서 부채감축 달성도 평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기관 중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만 적용
 - 2) 사업비 집행률(1점), 부채감축 달성도(1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1점)
 - 다만, 15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채감축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률(1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집행실적(2점)으로 평가
 - 3)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1점)와 사업비집행률(1점)로 각각 평가

- 평가지표 및 가중치, 가산점 등은 기관 유형별, 중장기 제출 여부별, 기타 조건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경영평가편람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함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고 경영평가편람에 명시함

라. 환산 방법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음
 -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경영평가편람에 밝히고 있으나 상세한 방법은 공개하지 않음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구간은 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함

2. 통합재정사업평가

가. 개요

<표 III-3> 통합재정사업평가 개요

평가명	통합 재정사업평가 (舊 재정사업 자율평가)
근거법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시작	2005년 (2016년 제도 변경)
빈도	1년
시행시기	1~5월
결과발표시기	6~8월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 각 부처 ▪ 메타평가 :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 각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5~10인, 위원장1인포함) ▪ 분야별 메타평가 : 기재부(일반재정(정보화)사업), 미래부(R&D사업), 지역위(지역 사업) ▪ 부처별 메타평가 : 메타평가협의회 * 메타평가 부처 :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 성과평가 지원기관 : 조세연, 정보화진흥원, KISTEP, KEIT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16년에는 전체 재정사업의 50%, ‘17년 70%, ‘18년 이후 100%, 단 계적 확대 예정) ▪ 일반재정사업(단위사업), R&D사업, 지역사업(세부사업) (단, R&D국방분야사업·지역SOC사업 (단위사업))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 메타평가 : 평가과정 충실도, 평가결과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 ▪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평가과정	부처 자체평가 : 1~3월 분야별 메타(상위)평가 : 4월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 5월
최종결과 발표양식 (등급 또는 점수)	자체평가 : 3등급(우수(15%), 보통(65%), 미흡(15%))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2013~2015 회계연도 평가), 2016.1

- 통합 재정사업평가(舊, 재정사업 자율평가¹¹⁾)는 「국가재정법」 등¹²⁾에 의거 매년 전체 재정사업에 대해 각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미래부·지역위가 메타평가를 통해 확인·점검하는 작업임
 - (목적) 사업 수행부처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 (기준) 부처 자체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는 성과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 조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나. 평가지표

1) 부처 자체평가 지표

<표 III-4> 통합재정사업평가 : 부처 자체평가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일반재정 (정보화) 지역발전	R&D (지역R&D)	
				일반	시설
관리	사업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		10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20	5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40	40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	40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로 설정**	3	3	3
	(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		
	(지역발전)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4	(4)** *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 서비스 개선 성과	4		
	(연구개발)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			1***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			2***
		과제평가의 질적지표 활용률			1***

* 성과계획서 확인 점검 결과와 다른 성과목표, 지표를 설정한 경우, 2-1(목표달성) 평가시 해당 성과목표, 지표의 점수를 절반으로 감점

**결과(질적)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0.6 이상인 경우

***지역 R&D에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성과 가점 적용. 단, 일반 R&D 가점은 적용 배제

- 11) 일반재정사업(기재부), 기금사업(기재부), R&D사업(미래부), 지역사업(지역위) 등 분야별로 이뤄지던 각종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하고 평가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12)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의거함

2) 메타(상위)평가 지표

<표 III-5> 통합재정사업평가 : 메타(상위)평가 지표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지표	일반재정 (정보화), 지역발전 (지역R&D) 사업 분야	R&D 사업 분야	점수
평가과정의 충실도	1-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10	10, 5
	1-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10	10	10, 7.5, 5
평가결과의 적정성	2-1. 성과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 일반재정 등 :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 R&D : 2-3이 '적용불가'인 경우 괄호안 배점 적용	10	20(30)	10, 7.5, 5
	2-2. 상대평가 준수여부	20(0)	10(0)	20, 12.5, 5, 적용불가
	2-3. 우수사업 등급 타당성 여부		10(0)	10, 5, 적용불가
지출구조 조정의 적정성	3-1. 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 일반재정 등 : 2-2 '적용불가'시 괄호안 배점 적용 * R&D : 2-2 '적용불가'인 경우 괄호안 배 점 적용	30(50)	20(30)	일반재정등:30(50),2 4(40),18(20),6(10) R&D:20(30),16(24),1 2(18),8(12),4(6)
	3-2. 지출구조조정 내역의 적정성	20	20	20, 12.5, 5
(감점)	평가보고서 등 제출기한 미준수			-5

다. 결측치 처리

- 메타평가의 평가지표 중 '적용불가'인 경우, 해당 지표의 점수를 다른 평가지표에 배분하며 이를 평가 지침에 상세하게 표기함

1) 일반재정(정보화) 지역발전사업

- '평가결과의 적정성'(30)항목 중 '상대평가 준수여부'(20) 지표에서 '적용불가'일 경우, '지출구조 조정의 적정성'(50)항목 중 '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지표의 만점을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함
- 사업수 및 예산 규모 편차로 인해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불가' 판정

2) R&D사업 분야

- '평가결과의 적정성'(40)항목 중 '상대평가 준수여부'(10) 지표에서 '적용불가'일 경우, '지출구조 조정의 적정성'(40)항목 중 '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지표의 만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함
 - 사업수 및 예산 규모 편차로 인해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불가' 판정

- '평가결과의 적정성'(40)항목 중 '우수사업 등급 타당성 여부'(10) 지표에서 '적용불가'일 경우, 동일 항목 내의 '성과계획에 따른 평가실시여부' 지표의 만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함
 - 우수 사업이 없는 경우 '적용불가' 판정

라. 환산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운용평가

가. 개요

<표 III-6> 기금운용평가 개요

평가명	기금운용평가
근거법	국가재정법 제82조
시작	2000년
빈도	운용실태 : 1년, 존치여부 : 3년
시행시기	'17년 1~4월 ('15회계연도)
결과발표시기	'17년 6월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 사업운영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일원화하여 직접 평가 ▪ 기금운용평가단 : 자산운용평가 수행. 기금존치평가반(연금금융, 교육문화, 산업과학, 복지노동)과 자산운용평가반(대규모, 대형, 중소형)으로 구성
평가대상	기금 : 대형(여유자금 평잔 1조원 이상), 중소형(1조원 미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운용하는 기금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을 포함하여 37개)
평가기준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비계량),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 관리(비계량), 자산운용 성과(계량)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함
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평가지침 통보 : '15년 6월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 '17년 1월중 ▪ 기금관리주체의 조사평가 자료 제출 : '17년 2월말 ▪ 제출자료 검토 및 보완 : '17년 3월1일~3월 중순 ▪ 대면심사 : '17년 3월 중순~4월 초순 ▪ 최종보고서 작성 : '17년 4월 말 ▪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제출 : '17년 5월말
최종결과 발표양식 (등급 또는 점수)	등급(총 6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자료 :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2016
 기획재정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II(자산운용부문), 2015.6

-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0년부터 기금의 운용실태, 존치여부에 대해 각 1년·3년 주기로 실시
 - (목적)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기준)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 관리, 자산운용 성과 등을 평가함

나. 평가지표

<표 III-7> 기금운용평가 지표

평가지표명	대형	중소형
[1]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15	25
1.자산운용체계의 적정성	3	8
①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1	4.5
②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의 분리와 견제	1	1.5
③ 외부 위탁운용체계의 적정성	1	2
2.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5	10
① 적정유동성 규모 및 자산배분 추정	2	4
② 현금성자금의 최소화 노력	0.5	1
③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의 적정성	2.5	5
3.자산배분의 적정성	7	7
① 자산배분의 합리성	2	3
② 운용상품 및 기관 선정의 적정성	5	4
[2]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 관리	35	25
1.자산운용 관리체계의 효율성	10	10
① 자산운용 관련 주요 위원회의 활동실적	3.5	4.5
②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체계	4	4
③ 운용자산 평가프로세스의 효율성	2.5	1.5
2.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5	8
①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6	3
② 포트폴리오 전체 통합위험관리의 효율성	7	4
③ 부실자산 처리의 효율성	2	1
3.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10	7
① 성과평가수행	4.5	3.5
② 성과평가 활용 및 관리	5.5	3.5
[3] 자산운용 성과	50	50
1.단기자산의 수익률 및 적정유동성	35W	35W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7Wa	7Wa
②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7Wb	7Wb
③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20Wa	20Wa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20Wb	20Wb
⑤ 현금성자금보유도	8W	8W
2.중장기자산의 수익률	35(1-W)	35(1-W)
① 중장기자산 과거 3년간 운용수익률	10(1-W)	10(1-W)
② 중장기자산 상대수익률	25(1-W)	25(1-W)
3.위험자산의 성과지표	8	8
① 위험자산 과거 3년간 샤프비율	8	8
4.운용상품집중도	5	5
① 운용상품집중도	5	5
5.공공성확보 노력도	2	2
① 공공성확보 노력도	2	2

* WA(현금성자금/전체자산) + WB(유동성자금/전체자산) = W(단기자산)

1-W = (중장기자산/전체자산)

자료 :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2016

기획재정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Ⅱ(자산운용부문), 2015.6

다. 결측치 처리

- 자산운용부문 평가지표는 비계량지표(절대평가)와 계량지표(상대평가)로 구성됨
- 비계량지표는 기금별로 단기자산, 중장기자산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고 세부 평가지표별로 평점 부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 다만,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되, 해당 배점을 동일 항목 내 다른 평가지표에 배분함을 평가지침에 명시하였으나 상세 계산방법은 내부적인 규칙으로 공개되지 않음
 - 예를 들어, A기금(대형)의 1.-①의 지표가 '해당없음'일 경우 배점 1점을 1.-②지표, 1.-③지표의 배점비율인 1:1로 배분하여 1.-②지표의 배점이 1.5, 1.-③의 배점이 1.5으로 1.지표의 총 배점은 3점으로 유지된다고 함

라. 환산 방법

- 해당사항 없음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가. 개요

<표 III-8>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개요

평가명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근거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작	2012년
빈도	1년
시행시기	3~8월
결과발표시기	9월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평가단(평가단장 1인, 총괄간사 1인, 분과장 4인, 평가위원 50인) : 보조금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기획재정부가 구성하며 그 규모는 당해 평가대상 사업 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구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보조사업평가단'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전체(총 1422개) - 소규모 사업 : 50억 이하 - 중규모 사업 : 50~200억 이하 - 대규모 사업 : 200억 초과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및 중규모 사업 :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 대규모 사업 :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목적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에 평가설명회(부처 및 평가단) 실시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 평가 자료를 토대로 약 1~2회에 걸쳐서 서면평가를 진행(4~5월) ▪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약 2회의 대면평가 실시(5~6월) ▪ 평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 확정(6~7월)
최종결과 발표양식 (등급 또는 점수)	6개 유형(즉시폐지, 단계적 폐지(일몰기한 제시),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감축율 제시), 정상추진)

자료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5.9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2012년부터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시행됨
 - (목적)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기준) 소규모 및 중규모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추가로 규모의 적정성까지 평가함

나. 평가지표

<표 III-9>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
	1-2. 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타당성
	1-3. 보조사업 구성(내역사업 등)의 명확성과 실효성
2.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3. 규모의 적정성	3-1. 보조율의 합리성
	3-2.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

자료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5.9

다. 결측치 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라. 환산 방법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가. 개요

<표 III-10>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개요

평가명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근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2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2
시작	시범 : 1999~2001년, 정식 : 2002년
빈도	1년
시행시기	8~11월
결과발표시기	12월
주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기관	조사업체(공개경쟁입찰)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등(760개, 2015년 기준)
평가기준	종합청렴도 : 내부청렴도(내부직원 평가), 외부청렴도(민원인 평가), 정책고객평가(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신뢰도 저해행위(설문감점, 점검감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측정결과에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견 제출사항 취합 및 검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개최(3월)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6월말)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7월)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전화, 온라인 등)(7~11월)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12월)
최종결과 발표양식 (등급 또는 점수)	5개 등급(1, 2, 3, 4, 5), 점수(10점 만점)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분야별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2016.3
국민권익위원회,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2016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29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됨

- (목적)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측정결과에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됨
- (기준) 내부청렴도(내부직원 평가), 외부청렴도(민원인 평가), 정책고객평가(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신뢰도 저해행위(설문감점, 점검감점) 등 측정·합산해 종합청렴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

<표 III-11>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평가지표

	가중치	측정영역	가중치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 측정항목	가중치	
외부청렴도	0.601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부패직접경험	0.511			
				부패간접경험	0.138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0.552			
				책임성	0.448			
내부청렴도	0.250	청렴문화지수	0.433	조직문화	0.631			
				부패방지제도	0.369			
		업무청렴지수	0.567	인사업무	0.413	직접경험	0.515	
						간접경험	0.173	
						인식	0.312	
				예산집행	0.347	경험	0.606	
						인식	0.394	
				업무지시공정성	0.240	경험	0.600	
		인식	0.400					
정책고객평가	0.149			부패인식	0.427			
				부패통제	0.294			
				부패경험	0.279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2016.3
 국민권익위원회, 2015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기본계획, 2016

다. 결측치 처리방법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

를 가중합산하며 이를 측정 매뉴얼에 명시함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직 유관단체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
- '14년에는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정원 1000명 이상 기관)으로 조정, 확대함

□ 결측치가 발생하거나 일부 기관이 제외되는 지표가 없다고 함

- 청렴도 측정의 목적이 취약한 분야를 진단하는 것이고 동일한 잣대로 보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표 설계 시부터 전체 기관에 적용가능한 지표로 구성
- 다만, 의미있는 정보를 발표하기 위해서 하위 지표의 점수는 발표하지 않고 내부청렴도/외부청렴도/정책고객 점수만 발표함

라. 환산 방법

□ 인식지표와 경험지표를 합산해서 상위지표 점수를 내야할 경우, 각 지표를 표준화

- 하는 작업을 거친 뒤 합산하며 이유 및 방법에 대해 측정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함
- 인식항목은 리커트 척도(7점 척도) 사용하고 편차가 작은 반면에, 경험항목은 별도산식 사용하고 편차가 큼 (개별지표는 각 10점 만점)
- 이 경우 편차 차이에 의해 실질점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 작업함
- 예를들어,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 부패간접경험 세 하위 지표를 합산해 부패지수라는 상위 지표의 점수를 낼 경우 표준화 작업 거침

1) 표준화 검토 배경

□ 2002년 이후 부패경험 응답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부패경험 응답이 없는 대다수의 기관과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기관과의 점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남

- 즉, 기관별로 드물게 발생하는 부패경험 유무가 기관의 점수를 과도하게 좌우하게 됨
- 이에 따라, 부패경험 항목으로 인한 과도한 점수편차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표준화를 통한 점수산출방식의 개선

- 앞서 언급한 문제점은 편차가 큰(0~10점) 부패경험 점수와 편차가 작은(약7~9점대) 부패인식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기 때문에 발생함
- 모든 항목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점수를 산출하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패경험 항목은 표준편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표준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요약하자면, 표준화는 점수의 편차가 큰 경험항목들의 편차를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축소·조정하는 방식

$\text{기관 표준화 점수} = m + z(=x-m/s)$ <p>x : 해당기관 경험 원점수, m : 전체기관 평균점수, s : 전체기관 점수 표준편차</p>

- 이를 통해 경험 항목 점수에 의해 기관별 청렴도가 지나치게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점수 편차가 작은 인식 항목이 청렴도 결과에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 지표별 가중치가 매우 세분화된 이유는 가중치 초기 세팅 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설정했기 때문임
 -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감사 담당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위/하위 모든 지표의 가중치에 대해 의견합치를 얻어낸 결과라 최대한 살리려고 함
- 국공립대학교,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등 기관의 수행기능이 일반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큰 기관은 별도의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함
 - 교수 인건비·연구비 횡령, 의료 리베이트 등 일반 공공기관 모형으로는 측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최근 모형개발 완료하고 측정 시작

6. 종합 및 소결

- 정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 평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 지표에 적용가능하지 않거나 해당 지표가 없는 경우, 가중치를 조정하는 사례가 많음
 - 해당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여 100점으로 환산
 - 또는 평가지표 중 '적용불가'의 경우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다른 지표에 배분

<표 III-12> 정부평가 사례의 결측치와 환산방법 종합

	결측치 처리	환산 방법	특이 /참고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유형별, 중장기 재무 계획 제출 여부별, 기타 조건별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함 ▪ 합산 시 일부 지표의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기관은 해당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해 100점으로 환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해 표준화할 수 있음 ▪ 표준화 방법 비공개 	-
통합재정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중 '적용불가'의 경우 해당 지표의 가중치를 다른 평가지표에 배분 ▪ 배분방법은 평가지침에 상세 표기 	해당사항 없음	-
기금운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기금에 대해서 '해당없음'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 ▪ 해당 배점을 동일 항목 내 다른 평가지표에 가중치 비율대로 배분함 	해당사항 없음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유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지표와 경험지표를 합산해서 상위지표 점수를 내야할 경우, 각 지표를 표준화해서 합산 함 ▪ 인식지표와 경험지표의 표준편차 차이가 실질점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임 	가중치 선정 시 델파이 조사 실시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부업무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매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 평가부문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임

- 정부업무평가 대상 42개 기관중 15개 기관이 규제개혁 부문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해당 부문의 가중치가 전체 100점 중 20점에 해당 하고 있어, 평가에서 제외된 기관의 규제개혁부문 평가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전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규제개혁지표의 이슈는 평가분야항목의 결측이 아니라 규제개혁 지표에 대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기관에 대한 대응의 문제임

- 통계학적 방법과 정부평가 사례를 고려해 규제개혁 부문의 평가 제외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음
 - 규제개혁 부문 평가 제외 대상 기관의 경우 규제개혁 부문 점수의 가중치가 20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거나 환산하는 방법이 필요함
 - 정부가 주관하는 여러 종류의 평가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제외 대상에 대하여 점수를 배분하거나 환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에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특정 부문 평가 제외 대상 기관이 실제로 평가받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활용하는 것이 기관의 특성을 많이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부문에서 평가받은 점수를 활용할 경우, 각 부문간 평균적인 성취도와 편차를 표준화하여 결측이 발생하는 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개혁 부문 평가대상기관과 평가 제외 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규제개혁부문에 노력한 기관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 특정부문에서 평가 제외 기관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함
 - 평가 주관기관의 평가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2013~2015 회계연도 평가), 2016.1.1
- 고길곤·탁현우·이보라, 설문조사 연구에서 결측치의 영향과 대체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4권 제3호: 49~75, 2014
- 국민권익위원회, 2015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기본계획, 2016
- 국민권익위원회, 201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2016.3
- 기획재정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Ⅱ(자산운용부문), 2015.6
-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2014.12
-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2016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6.1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5.9